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지침

2022. 6

환 경 부

목 차

제1장 총칙 1

제1절 지침의 목적 1

제2절 적응대책의 의의 및 성격 1

제3절 적응대책의 범위 2

제4절 적응대책 수립 주체 및 절차 2

제2장 적응대책의 작성원칙과 작성내용 4

제1절 적응대책 수립의 기본원칙 4

제2절 주요 용어 4

제3절 적응대책의 내용 6

제4절 대책 작성 시 유의사항 7

제3장 행정사항 7

제1절 제출일정 및 제출서류 7

제2절 주체별 역할 8

제3절 자료제출 협조 8

제4절 비밀준수 8

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지침

2022.06.03 제정

제1장 총 칙

제1절 지침의 목적

1-1-1. 이 지침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4조에 따라,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(이하 "적응대책")의 수립방향, 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「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」에서 지정한 기관(이하 "대상기관"이라 한다)이 체계적인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.

제2절 적응대책의 의의 및 성격

1-2-1. 적응대책은 대상기관이 기후위기로부터 시설보호,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중단 방지 등을 위한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, 기후위기 적응 비전 및 전략, 세부시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해당 대상기관의 중·장기적인 계획이다.

1-2-2. 적응대책은 법 제38조제1항의 「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」, 같은 조 제4항의 「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」 및 대상기관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(이하 "관계 중앙행정기관"이라고 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관할 지자체"라 한다)의 관련 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상호 연계성을 확보한다.

제3절 적응대책의 범위

가. 대책의 시간적 범위

1-3-1. 대상기관은 시설물의 내구연한, 공공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응대책 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 후까지의 기후위기에 의한 위험, 피해 등의 영향을 예측하고, 장기적응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며, 적응대책은 수립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의 계획기간에 대한 구체적 세부시행계획을 포함한다.

나. 대책의 공간적 범위

1-3-2. 대상기관은 시설물 또는 사업장별로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한다.

1-3-3.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(이하 “대상시설”이라 한다) 및 공공서비스 등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적응대책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한다.

다. 다른 계획과의 관계

1-3-4.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1-3-5. 적응대책 수립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영에 따른다.

제4절 적응대책 수립 주체 및 절차

가. 적응대책 수립 주체

1-4-1.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고시를 통해 지정된 대상기관은 적응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-4-2. 위 항의 대상기관 외에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·관리하거나 공공서비스가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.

나. 적응대책 수립·제출 및 변경절차

1-4-3. 대상기관의 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지역주민,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, 환경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.

1-4-4. 대상기관은 적응대책(안)을 마련하여 제출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고, 환경부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에 의견을 통보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1-4-5. 환경부장관은 적응대책(안)에 대한 검토 의견을 송부하기 위하여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등 관계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1-4-6. 대상기관은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하며, 수립한 적응대책을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-4-7. 적응대책 이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상기관은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응대책을 변경해야 한다.

1. 대상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의 변경
2. 기관 사업영역 변경에 따른 보유·관리 대상시설의 변경
3. 적응대책상 세부목표, 이행전략 등 내용상의 중대한 변경
4. 기타 적응대책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

1-4-8. 대상기관은 적응대책을 변경한 경우 1-4-4부터 1-4-6의 제출절차를 따른다.

제2장 적응대책의 작성원칙과 작성내용

제1절 적응대책 수립의 기본원칙

2-1-1. 적응대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·장기대책으로 대상기관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사회·경제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응대책의 수립·이행을 위한 조직,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한다.

2-1-2. 이 지침에서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작성기준을 제시하므로, 대상기관은 사업장의 특수성,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작성항목의 일부를 추가·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. 단,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부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

2-1-3. 대상기관은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며, 모니터링·이행점검 및 환류를 통한 적응대책의 수정·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한다.

제2절 주요 용어

2-2-1.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.

① **기후** :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

② **기후변화** :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

③ **기후위기** :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, 식량 부족, 해양산성화, 해수면 상승,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

④ **기후위기 적응** :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

⑤ **기후변화 영향** :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 및 위기, 사회·경제적 손실 및 인명 피해 등을 의미

⑥ **기후변화 영향 분석** : 기후변화에 의한 현상·사건이 미칠 수 있는 위험,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·파악하는 과정 및 그 결과

⑦ **기후변화 위험도** :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어떤 사건이 미래의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으로, 기후변화 위험도가 크다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, 그로 인한 피해가 큼을 의미

⑧ **기후변화 위험도 평가** :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가능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가져올 것인지 피해 규모 등을 추정하는 것

⑨ **기후변화 위험도 관리** : 기후변화 위험도를 저감·관리하는 것으로서,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·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

⑩ **대상시설** : 기후변화에 따른 특정 사건의 발생 개연성이 높으며, 사건 발생 시 인명·재산피해, 사회적 이슈 초래 등이 우려되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사업장 등

⑪ **시설관리자** : 대상시설을 직·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나 공공서비스 제공업무를 직·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

⑫ **공공서비스** : 공공기관 등의 사업영역 중 국민 생활 편익 증진과 안전 도모 등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사업 활동으로 교통, 에너지, 용수, 환경, 주거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영역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

⑬ **우선순위 기후위험도** : 기후변화 위험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어 그 발생 원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응대책의 수립·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

⑭ **세부시행계획** :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 ·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으로, 성과목표 및 전략, 추진계획, 추진일정, 담당부서, 예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며, 이행실적 작성의 대상이 됨

제3절 적응대책의 내용

2-3-1.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대상인 시설물, 시설관리자, 공공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립한다.

2-3-2. 적응대책은 영 제44조제4항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

(1) 적응대책 개관

① 계획의 배경, 수립범위(시간적, 공간적, 내용적 범위), 수립과정 등

②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

(2) 대상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

① 대상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

- 대상기관의 기후위험도 관리체계, 기후위기 고려수준 등 포함

② 대상기관의 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 현황

-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

(3) 기후변화 영향 분석

① 대상기관 및 대상시설에 대한 기초조사

- 지역현황, 관련 계획 및 법규, 국내외 사례분석 등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·분석

② 기후현황 및 전망

- 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에 대한 조사·분석

③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예측

- 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별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예측

(4)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

① 위험도 평가 목적 및 대상

② 위험도 평가 방법

③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우선순위 위험도

(5) 기후위기 적응전략 및 세부시행계획

① 기관의 기후위기 적응 목표 및 전략

②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

- 세부목표, 이행전략, 실천계획 및 추진일정 포함

(6) 적응대책 이행 및 관리

① 이행 추진 조직 및 예산

② 이행사항 자체 모니터링 계획

제4절 대책 작성시 유의사항

2-4-1. 전체 적응대책을 작성하는 과정, 각 요소간의 관계 등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며, 기후변화 위험도평가, 위험도평가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도출 과정도 이와 같다.

2-4-2. 적응전략과 세부시행계획 간의 연계성을 유지하며, 각 세부시행계획의 목표, 전략, 실천계획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.

제3장 행정사항

제1절 제출일정 및 제출서류

3-1-1. 대상기관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(이하 “최종기한”이라 한다) 적응대책을 수립한 후,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,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.

3-1-2. 대상기관은 적응대책 제출 시, 책자 2부와 CD 1부(한글 및 PDF 파일, 자료집 포함), 검토의견 반영여부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절 주체별 역할

3-2-1. 이 지침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총괄 관리
2.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마련 및 제공
3.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행정적, 기술적 지원
4. 수립된 적응대책에 대한 이행실적 모니터링

3-2-2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자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소속 대상기관의 적응대책 수립시 협의
2. 제출받은 적응대책에 대한 검토 및 필요시 수정·보완 요청
3. 소속 대상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이행 모니터링

제3절 자료제출 협조

3-3-1. 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은 대상기관의 적응대책 수립 지원과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때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한다.

제4절 비밀준수

3-4-1. 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(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)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.

3-4-2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.

1. 적응대책 협의를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는 자
2. 적응대책의 내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취급하는자
3. 기타 이 지침을 통해 적응대책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

3-4-3. 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